

『구미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 및 선거절차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』
주민조례청구 수리 여부 심의의 건

검 토 보 고 서

1. 청구인대표자 : 오세권, 안언주

2. 청구이유

○ [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] 준수

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인장을 직접 찍어야 함에도 인쇄
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위법과의 불일치 문제가 제기
되고 있으며, 이는 선거 절차의 명확성과 정당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
란을 해소 하여 법적 원칙을 회복하고자 함.

○ [지방자치법 제13조]에 따른 행정지원

구미시가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, 공정선거를 위한 필요한 행
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직접 날인이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돕는 지자
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.

○ 헌법상 [참정권] 및 시민의 알 권리 수호

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미 시민의 소중한 기본권인 참정
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, 「공직선거법」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
용지 발급 시 직접 도장 날인 하는 조항을 잘 준수 하도록 함으로써
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범위(안 제4조)
- 법령 건의(안 제5조)
- 예산 편성(안 제6조)

4. 검토의견

○ 본 주민조례청구안은

- ◆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날인 시 인쇄 날인이 아닌 직접 날인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청구된 안으로써, 본 청구안이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 제4조, 제5조 및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사할 필요가 있음.

○ 검토 결과,

- ◆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(법 제4조): 제외 대상 해당

-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(법 제4조제1호) 해당

선거업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며, 투표용지의 날인 방법은 현행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, 이를 조례로 규정하여 구미시의 사정만 변경하려는 것은 법 제4조제1항의 ‘법령을 위반하는 사항’에 해당하여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으로 판단됨.

- ◆ 주민조례청구 요건 충족 여부(법 제5조): 미충족

제출된 청구인명부 확인 결과, 서명인 수가 12명으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4,862명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.

- ◆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적합 여부 등(법 제6조 등)

법 제6조에 따라 우리 의회는 2026년 4월 15일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였고, 법 제8조에 따라 본 청구안의 서명요청 기간은 2026년 4월 16일부터 2026년 7월 29일까지이며, 법 제10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제출 기간은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 부터 5일 이내인 2026년 8월 3일까지임. 청구인명부는 제출 기간 내 인 2026년 7월 30일 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청구인명부 제출 기간 내 적합하게 제출되었으나, 법 제10조제1항에서 제시하는 청구권자 이상이 될 때에만 그 제출기한이 의미가 있으므로, 제출기한을 준수하였느냐의 여부는 본 사안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사료됨.

- ◆ 이상을 종합하면, 본 청구안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고, 같은 법 제5조에서 정한 유효서명인 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,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